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00. 4. 19
교육사회위원회

1. 제안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제안및회부일자

- 제안 : 2000년 4월 1일 제출
- 회부 : 2000년 4월 3일

3.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도 조례중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병설 및 통합학교의 위원정수 산정기준을 명시 (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법 및 시행령 조항 수정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권이 초·중등 교육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항 삭제 (안 제21조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안 제2항 및 제3항)

5. 검토의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29호)이 2000년 2월 28일 개정되어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종전에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 앞으로는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에는 13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세분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